



## 장학규정 시행세칙

규정번호	2-5-3
제정일자	1995. 3. 14.
개정일자	2024.3.20.
책임부서/팀·계	입학학생처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생 선발 및 지급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3조(사무관장)** 본 대학의 장학업무 중 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무는 입학학생처에서 관리하고, 장학기금의 관리는 사무처에서 담당한다. <2023. 2. 23. 개정> <2023. 3. 30. 개정><2024.3.20.개정>

### 제2장 장학심의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2023. 2. 23. 삭제>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 및 약간 명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입학학생처장이 된다. <2023. 3. 30. 개정><2024.3.20.개정>
2. 위원은 전임교원 중 총장이 위촉하는 4인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3. 간사는 입학학생처 장학담당자가 된다. <2023. 3. 30. 개정><2024.3.20.개정>
4.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장학금의 예산 및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
2. 장학금 배정
3. 장학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가 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위원장은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될 시 선발 일체를 집행 할 수 있다.

## 제3장 장학금 종류와 지급기준

**제8조(장학금 종류 및 선발기준)** ①교내장학금은 본 시행세칙의 (별표 1)의 교내장학생 선발기준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2023. 2. 23. 개정>

②교외장학금은 국가기관, 외부장학재단, 기업체 및 개인 등이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장학금 지급처 (국가기관, 외부장학재단, 기업체 및 개인)가 지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2023. 2. 23. 개정>

③ 교외 장학금 지급기관이 대학에 학생의 선발을 의뢰할 경우 선발기준은 학생의 소득구간, 성적, 잔여 장학금 지급 가능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2023. 2. 23. 개정>

④ 장학규정 제9조(장학금의 신청) ③항의 단서에 따라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23. 2. 23. 신설>

1. 대한민국 국적 미소지자
2. 국가유공자 장학금
3. 등록금 지원 외 장학금(생활비, 대가성 등)
4. 학과추천장학금

## 제4장 장학금의 지급<2023. 2. 23. 개정>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지급방법)** 장학금은 확정된 금액만큼 등록금에서 감면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2조(장학생의 확정)** <2023. 2. 23.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장학증서)** 학생취업처장은 장학증서를 작성하고, 총장은 이를 장학생에게 수여한다. <2023. 2. 23. 개정>

## 제5장 장학금의 지급제한

**제15조(이중수혜 금지)** ①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하다. 단, 이중수혜인 경우 본 시행세칙의 [별표1] 교내장학생 선정기준의 장학목적이 등록금 외 지원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2023. 2. 23. 개정>

②<2023. 2. 23. 삭제>

**제16조(장학생의 교체)** 장학생이 규정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된 장학금을 60일 이내에 다른 학생에게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삭제>

②<삭제>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199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세칙시행 이전에 이어 선정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이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제1항 개정세칙은 2004학년도 제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07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0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0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09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0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09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10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10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0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8. 11.>

이 규정은 2022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별표 1]은 202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 [별표 1]의 전공심화과정특별(만학도), 특별(만학도)신입생, 특별장학은 202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장학규정 제6조 및 장학규정 시행세칙 제8조에 의한 장학생 선발 기준

## 1. 등록금 지원 장학금

## 가. 일반 장학금

장학종류	장학금액	선정기준		성적기준		
		선발인원	선발기준	0이수학점	평점	
학과 추천	세부 구분	장학금액	선발인원	선발기준	직전 학기 3.00이상	
	SAU최우수	등록금 전액	학년별 1명씩 배정 (단, 학년별 재학생 수가 50명 이하일 경우 선발 제외)	학년별 수석		
	세부 구분	장학금액	선발인원	선발기준		
	SAU수석	200만원	◇ 정규과정 ○ 학년별 각 1명씩 선발 ※ 학년별 장학생 배정 인원내에서 반 제한 없이 선정가능	◇전공심화 / 산업체위탁과정 ○ 학년별 각 1명씩 선발 ※ 학년별 장학생 배정 인원내에서 반 제한 없이 선정가능		
	SAU진리	170만원	▶ 학년별 인원수가 70명 이상인 경우 각 2명씩 선발 ▶ 학년별 인원수가 20명 이하인 경우 SAU박애만 선발 ▶ 학년별 인원수가 15명 이하인 경우 선발하지 않음	▶ 학년별 인원수가 15명 이하인 경우 SAU박애만 선발 ▶ 학년별 인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선발하지 않음		
	SAU박애	140만원		1.학업성적 우수 2.가정형편 3.학과 기여도		
	다문화	70만원	▶부모 중 1인 이상 외국국적인 학생 ▶외국국적의 부모 중 1인 또는 본인이 귀화한 학생			
	초지	등록금 전액	전임이상 교원 및 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화목	70만원	직계존비속 및 부부, 형제, 자매, 남매 인 재학생			
안산시 산업체노동자 공무원 전공심화과정 특별	주경	50만원	산업체위탁, 협약반에 재학 중인 자(2022년까지 입학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등록금 20%	등록금 20%	안산인재육성재단의 산업체노동자 장학금 수혜자			
	등록금 30%	등록금 30%	공무원, 군무원, 부사관 및 경기도내 전문대학교 직원인 자			
	등록금 30%	등록금 30%	전공심화과정에 재학중인 자			
	본인부담액 50%	전공심화과정에 재학(입학예정) 중인 자로 아래기준에 충족하는 자 - 만 30세 이상인 자 - 국가장학금 신청자(미신청자 제외) - 재학기간 중 휴학자는 다음학기부터 선정 불가		없음		
	100만원	100만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100만원	100만원	외국국적을 가진 순수외국인인 자(단, 학칙시행세칙 제50조에 의한 유급자는 제외)			
	100만원	10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등급 1~3급)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없음	
국가유공자	등록금 50%	등록금 50%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손)자녀		없음	직전학기 70점이상
	별도책정	별도책정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교 및 학과활동에 기여한 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없음	

## 나. 특별 장학금

장학종류	장학금액	선정기준	성적기준	
			이수학점	평점
특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특별SAU사랑	별도책정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근거)		
특별(만학도)	본인부담액 50%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만 30세 이상(산업체위탁, 전공심화과정 제외) ▶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미신청자 제외) ▶ 재학기간 중 휴학자는 다음학기부터 선정 불가 ▶ 2024학년도 입학한 자부터 적용(국가장학금 신청기준은 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부터 적용)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특별(산업체위탁)	등록금 50%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023년 이후 산업체위탁 과정 입학자)	없음	
특별(만학도) 신입생	등록금 전액	총장이 특별히 장학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만 30세 이상 ▶ 산업체위탁, 전공심화과정 제외 ▶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미신청자 제외) ▶ 재학기간 중 휴학자는 다음학기부터 선정 불가 ▶ 재학기간별 장학금액 별도운영 ▶ 2024학년도 입학한 자부터 적용 ▶ 2학년부터는 특별(만학도)기준으로 적용	없음	
특별(재난)	별도책정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부담 완화 목적)	없음	

## 2. 등록금 외 지원 장학금(생활비 / 대가성)

### 가. 일반 장학금

장학종류	장학금액	선정기준	성적기준	
			이수학점	평점
공로	가. 총학생회	등록금전액	총학생회장	12학점 이상
		200만원	부총학생회장	
		180만원	국장	
	나. 과대표	160만원	학과대표 (신설 및 폐학과는 장학금액의 50%만 지급)	
부속기관	부속기관	120만원	방송국 : 실무국장 / 학보사 : 편집장	직전 학기 2.0이상
		100만원	방송국 : 총무 / 학보사 : 부편집장, 총무	
		80만원	방송국 : 정국원 / 학보사 : 정기자	
		50만원	방송국 : 수습국원 / 학보사 : 수습기자	
장애학생도우미	별도책정	장애학생도우미로 선발되어 활동하는 자		
국가근로장학	별도책정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근로하는 자	없음	직전 학기 70점이상
학과·행정부서 봉사장학금	별도책정	학과·행정부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근로하는 자	12학점 이상	

### 나. 특별 장학금

장학종류	장학금액	선정기준	성적기준	
			이수학점	평점
특별	별도책정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특별(재난)	별도책정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부담 완화 목적)	없음	없음
특별(긴급지원)	별도책정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특별공로	별도책정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특별장학	별도책정	총장이 특별히 장학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등록금한도(계절학기포함)		

[별표 2]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한 장학금 반환 기준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